

광주지방법원 2021. 2. 3 선고 2020가단50096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 리 인 법 무법 인 빚고을종합법 른사무소

담당변호사 정규련

피 고 광주광역시 북구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 2021. 1. 27

판결 선고 2021. 2. 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,802,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9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91. 6. 22. 공유물 분할에 따라 광주 북구 C 답 29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도로포장 공사라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, 지하에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,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이 건물 진입을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점유 여부 및 의무의 성립 먼저,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계속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거나 확장,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22032판결,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18451판결의 각 취지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 도로라 하더라도,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상수관을 매설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위 도로는 피고가 점유, 관리하는 도로라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, 이 사건 상하수관을 매설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. 11. 15. 부터 2020. 8. 27. 까지의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부당이득반환의 범위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어 있다고 보이고, 피고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포장 공사를 하였을 무렵 이후의 임료 감정은 현황대로

평가하여야 한다.

이 법원의 D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, 원고 가구하는 이사건 소재지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5년 전인 2014 . 11. 15. 부터 2020 . 8. 27. 까지의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황상태인도로로 평가한 임료는 합계 9, 802, 380원이다.

다.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, 802, 38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임계산말 일이후로서 원고 가구하는 이사건 청구 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송달다음날인 2020 . 9. 23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 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선희